

보험계약대출 약정서

본인은 AXA 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음에 있어 다음과 같이 신청 및 약정합니다.

제 1 조(거래조건)

- 대출기간 :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기간
- 대출한도 :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 해약환급금의 80% 이내
- 이자율 : $^{**}\%[\text{산정기준:기준금리(예정이율)}+^{**}\%]$
- 이자납부시기 : 약정기간 동안 별도 납입 없이, 만기일자에 대출원금과 함께 모두 일시 상환

※ 변제의 사유 및 상계·차감처리, 주소변경 통지 의무 등은 약정서 제 2 조부터 제 8 조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정보		이자율				대출 금액	대출 개시일
증권번호	상품명	금리 기준	기준금리 (A)	가산금리 (B)	적용금리 (A+B)		
*****	보험계약대출	고정	*%	*%	*%	*****원	****.***

※ 기준금리 : 보험계약별 해지환급금 부리이율(예정이율)

제 2 조(정의)

- (1) "보험계약대출"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이라 함은 보험계약대출의 기초가 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 (3) "보험계약대출금"이라 함은 1 항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회사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말한다.

제 3 조(보험계약 대출기간, 원리금상환)

보험계약대출의 대출기간은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의 보험기간 내로 하되, 보험기간 만기 전 보험계약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제 4 조(대출이자납부 등)

- (1) 보험계약대출의 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르며, 대출한도 및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이후의 기간에 변경된 대출한도 및 이자율을 적용한다.
- (2) 보험계약대출이자자는 일단위로 계산하며 보험계약대출금 상환 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기간 만기 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보험계약대출 실행일에 상환되는 경우에는 1 일분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 5 조(원리금 납입)

- (1) 대출금 상환 방식은 만기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 (2) 대출금이자자는 만기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일 보험계약에 대하여 추가대출을 받을 경우, 기 발생한 이자는 추가대출금에서 공제하여 납입한다.
- (3)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를 해당 납입기일 까지 납입하지 않더라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 (4) 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 중도 대출금과 그 이자에 대하여 임의상환이 가능하며, 상환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6 조(변제의 사유 및 절차)

- (1)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한다. 단, 회사에서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상계약이 무효로 된 때
 - ②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 해지되어 부활 청구기간이 경과될 때
- (2) 제 1 항 2 호의 경우에 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일 7 영업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3) 보험계약대출 처리 후 계약사항 변경이나 기타사정으로 해지환급금이 변동되어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그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본인은 초과 분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 7 조(우선변제)

보험계약대출계약에서 정한 제지급금(제보험금, 반환보험료, 해지환급금, 배당금 등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대출기간의 만료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본인이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등에 지급한다.

제 8 조(주소 등 변경통지)

- (1)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2) 제 1 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이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단,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 9 조(인지세의 부담)

보험계약대출 관련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회사가 부담한다.

제 10 조(대출계약철회)

- (1)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2)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서면, 전화 등으로 보험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3)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된다.